

성폭력 보도와 인격권

김 덕 모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I. 머리말

최근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현재 성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안 중 하나다. 이에 우리 언론은 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의 성폭력 보도가 선정적으로 흐르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성폭력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흥밋거리로 다루거나 선정적으로 접근한 보도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근절 방안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구제 방안 등을 제시하기보다는 성폭력 범죄의 양상이나 당시 상황 등만을 상

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담아내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책임한 호기심을 이끌어 내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치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보도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고 그의 주장을 수긍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는 보도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보도 과정에서 기사 작성자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나 주변 인물의 신상이 필요 이상으로 공개되는 경우도 발생해 피해

자와 그 가족을 이중의 고통으로 내모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가 피해자의 상처를 위로하고 동일 사안의 재발을 막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인권을 또 한 번 철저히 짓밟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성폭력 보도와 인격권'에서는 우리 언론의 성폭력 보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보도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침해되는 인격권의 유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런 보도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원인은 무

엇이며, 성폭력 범죄 보도에 있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하는 언론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 언론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II. 성폭력 보도의 문제점

굳이 통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폭력·성희롱과 관련한 각종 사건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접하며 산다. 지난해 8월 육영재단 국토 순례단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올해 발생했던 초등학교 성폭행 살해 사건, 전국을 무대로 자행된 연쇄 성폭행 및 살인 사건, 속칭 ‘발바리 사건’, 교정시설에서의 성추행 사건, 국회의원들의 성추행 사건 등 성범죄 관련 보도가 연일 신문 지면과 방송화면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의 성범죄 관련 보도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한 나머지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희생자인 피해자의 인권 측면의 보도가 소홀하고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선정적으로 묘사되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언론보도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2중의 피해를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언론의 성범죄 관련 보도가
성범죄 예방 대안 제시 보다는
선정적 보도 등으로
2중의 피해를 안긴다는 지적 있어**

모든 뉴스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지만, 성범죄와 관련된 기사는 그 이상으로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명예 문제가 걸려 있는 사건인데다가 폭행 내용의 구체적 묘사가 ‘포르노그래피’화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언론이 성과 관련된 성범죄 관련 기사를 어떻게 취재, 보도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들을

정리해보자.

(1)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성범죄 보도를 묘사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심어주고 피해자를 선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보도

즉 성범죄 기사에서 잘못된 용어 사용 문제가 여럿 지적됐다. 성기를 “은밀한 곳”, “치부” 등으로 표현하거나 “성고문”, “성학대”, “성노리개”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건의 심각성을 떨어뜨리고 성폭력 피해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을 주입한다는 지적이다. “10대 소녀”, “여중생”, “여고생” 등의 용어로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을 강조하는 것도,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으로 피해자를 바라보는 선정적 시선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2) 성폭력 규정을 회피하거나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성인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청소년 성폭력

보도의 전형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8월 육영재단 국토 순례단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조선일보>는 『“성희롱? 딸들이 애라도 뵈냐”』(2005년 8월 6일자)라는 제목과 ‘육영재단 박근영 이사장 발언 파문 / 국토 순례단 간부 성희롱 의혹 관련’이라는 부제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우회는 “정치인들의 공방에서 사용되는 ‘의혹’, ‘파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박 이사장의 발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용어를 사용할 경우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 없는 사건으로 재구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3) 피해자의 주체성을 왜곡하는 보도

성폭력 피해자인 10대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가 몰래 가해자와 합의한 것을 거부하고 고소를 택한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서도 언론의 가부장적인 시각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아빠는 합의해줬지만...“난 절대 용서 못해” 성폭행 피해 여중생』(조선일보 2005년 3월 4일자)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판단해 직접 고소를 할 수 있

는 권리가 있음에도 ‘나는 절대 용서 못해’라고 표현해, 아빠의 행동은 합리적이고 성숙한 판단으로, 피해자의 행동은 비합리적이고 미성숙한 판단으로 간주하는 인상을 준다(정하경주, 2006).

(4) 선정적 묘사와 피해자 고통 외면한 흥미위주 보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묘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고생, 조폭 영화 찍듯...』(조선일보 2005년 4월 22일자) 기사는 가해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초래했는가 보다는 ‘치부를 쑤셔대고’, ‘별 거숭이’, ‘비명을 삼켜야했다’ 등의 자극적이고 구체적 표현을 남발해, 가해 학생들이 저지른 폭력을 자극적인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바바리맨’ 딱 걸렸어』(한겨레 2005년 6월 25일자) 등의 일부 보도는 성폭력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거나 사건 자체를 흥밋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즉 시각적 성폭력 행위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성기 노출행위를 ‘음란행위’, ‘변태행위’로 정의함으로써 성기노출을 성

폭력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며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 정도로만 다루었다는 것이다(정하경주, 2006).

(5) 본말 전도에 의한 왜곡보도

‘진실은 알 수 없다’ 식으로 성폭력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나,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 서술방식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히 그간 성폭력 사건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온 부분이다.

지난해 성폭행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국토순례단 보도, 유명농구선수 성폭행 사건 보도 사례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살펴 볼 수 있다.

- 국토순례단 보도

「정모(56) 단장은 “부적절한 총대장을 선임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식사나 잠자리 등은 부족한 예산을 고려해 볼 때 어느 국토순례단보다 나았다”고 말했다. 총대장직에서 물러난 황모(43) 씨는 성희롱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원 봉사하는 마음으로 총대

장직을 맡았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05년 8월 2일자). : 가해자 측의 인터뷰를 강조한 기사쓰기로 사건의 본말을 희석하고 있다.

- 유명 농구선수 성폭행 사건 보도

「권 씨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A선수 팬클럽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해 12월 “2003년 7월 승용차 뒤쪽 좌석에서 A선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A선수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선수는 “서로 합의 하에 벌어진 일”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중앙일보 2005년 7월 27일자).

: 이러한 기사들이 ‘억울하다’, ‘합의 하에 벌어진 일이다’와 같은 가해자의 말로 끝맺고 있어 마치 “본질 자체가 성폭력이 아닐 수도 있다”거나, “가해자의 입장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중앙일보>와 같은 사건을 다룬 아래 <서울신문> 기사에 대해서는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피해자 측 변호사의 요구사항과 문제제기

로 결론지음으로써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현장검증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는 분석이 있었다.

「유명 프로농구 선수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고소사건 조사과정에서 검찰이 피해자와 피의자를 모두 불러 각종 상황을 재연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폭

성폭력 피해자들이 언론의 부주의로 인해 격지 않아도 될 2차 폭력에 시달리는 상황 반성해야

행 사건에서 고소인을 현장검증에 참여시키거나 피의자와 대질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좀체 실시되지 않는다. (중략) B양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강지원(전 청소년보호위원장) 변호사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성폭행이나 성행위 장면을 일일이 직접 재연토록 한 것은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사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수사검사 교체 및 문책을 요구했다(서울신문 2005년 7월 27일자).

(6) 사건의 원인을 사회분위기나 피해 여성 등에 돌리는 듯한 보도

대전 지역으로부터 시작된 연쇄 강간범 속칭 ‘발바리 사건’의 원인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주장을 인터뷰하여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마치 그의 범행이 모멸감을 준 여성취객이나 열등감의 표출 등으로 묘사,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일보>는 『택시 운전 때 여성취객의 모멸이 성폭행, 연쇄범행 불러』(2006년 1월 20일자 보도) 제하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아예 이 씨의 과립치한 범행이 “모멸감을 준 여성취객”탓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셈이다.

<대전일보>는 한 술 더 떠 『“억눌린 열등감 폭발 ... 죄의식 상실”- 심리학자가 본 ‘발바리’』라는 제하의 기사(2006년 1월 21일자 보도)에서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여성들이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거나 낮선 사람을 쉽게 집안으로 들어

오게 하는 등 범행기회를 제공한 것도 사건을 유발시킨 원인” 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에게 무시당한 분풀이’, ‘범인의 열등감’, ‘약한 자에 대한 공격성’ 등을 지적하는 다른 전문가들의 말은 실명으로 인용했으면 서도 ‘여성들이 범행기회를 제공했다’는 말만 유독 ‘전문가들’ 이라고 적고 있다.

(7) 언론 보도에 의한 신원 노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보도

2004년 12월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던 ‘밀양 사건’ 관련 언론보도 사례가 대표적이다. 밀양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언론의 부주의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2차 폭력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깊은 반성을 요한다. 밀양 사건 보도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는 피해자 신원 노출의 문제였다. 언론이 피해자와 직접 인터뷰를 해야만 뉴스 가치가 있다는 언론계의 오랜 관행 때문에 무리한 인터뷰가 이어지고,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이 2중, 3중

의 고통을 겪는 것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일부 언론들이 피해자의 신원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신원을 직·간접으로 노출함으로써 2중의 고통을 안겨 주었다. ‘00광역시’, ‘00구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O양 자매’로 소개하고, 뒷모습을 보여 주는가 하면 음성 변조없이 인터뷰 내용을 내보냄으로써 이들 피해 학생들은 언론 보도 후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일가족은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권수현, 2006).

따라서 언론은 이러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피해자의 주거지, 나이, 성(姓) 등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8) 인권 문제인 성폭력 문제를 성윤리와 도덕 문제로 다루어 본질을 왜곡하는 보도

성폭행 문제를 ‘성문란’ 내지는 ‘성윤리 의식의 부재’로 몰고 나감으로써 성폭행 문제를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성폭력의 결과를 낙태나 자살 같은 사회문제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순결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성폭력이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 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성문화의 근본적인 변혁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한편, 이러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의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도 문제이지만 최근 ‘모 국회의원 성추행 몰래카메라’ 사건의 사례에서 보듯이 당사자들이 모르는 가운데 몰래카메라에 의해 만들어진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무단 유통되거나 배포됨으로써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해지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

Ⅲ. 성폭력 보도 개선방안

성폭력은 ‘영혼의 살인’이라고 일컬어 질 정도로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 해 동안

하루 39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특성상 신고된 건수가 그 정도이니 신고되지 않은 건수를 추정하면 대략 연간 25만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자체도 문제지만 피해자들이 조사과정에서 받는 2차 피해나 세심하지 않은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침해 등 인격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04년 40여 명의 고등학생에 의해 무려 1년 가량이나 성폭행을 당했던 밀양중학생 사건의 2차 피해와 관련, 언론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 인권보호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근본원인 분석이나 대안마련에는 적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이지 못했다. 여성 성폭력 사건은 여성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성폭력 사건을 단순히 피해자의 심경을 듣고 성폭력 피해 후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단순하고 표피적인 보도에 그친다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된다. 우리 언론에 성폭력 보도가 존재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시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성폭력이 있어서는 안 될 악행이라는 사실을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의 성폭력보도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해

**성범죄 관련 내용을 다루는 언론은
인권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취재·보도에 임해야**

볼 수 있다.

첫째,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언론의 성폭력 보도 내지는 성범죄 보도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치 언론이 선거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지향하는 것처럼 성폭력 관련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 피해자의 신분 노출이나 초상권 침해에 의한 인격권 침해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을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도내용과 방식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마치 수용자 주권시대에 미디어 액세스권이 부여되는 것처럼 피해자가 성폭력 보도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보도 과정에서의 권리'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도 과정 가이드'를 제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보도과정에서의 권리

- *사건 보도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인터뷰 전, 보도 이후 예상되는 2차 피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
- *보도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입었을 때 문제제기할 권리.
- *보도과정에서 무기력하고 나약한 피해자로 보여지지 않을 권리.
- *피해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

- 을 가진 생존자로 보여 질 권리.
- *남성중심적 통념에 근거한 인터뷰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영상이나 멘트로 대상화되거나 왜곡되지 않을 권리.
- *성폭력 사건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인격적 주체로서 배려받고 존중받을 권리.
- *단지 취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보도내용과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 *취재와 인터뷰에 응할 권리.
- *취재와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권리.
- *동의없이 인터뷰 당하지 않을 권리.
- *인터뷰는 동의하였으나 언론보도를 거절할 권리.
-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와 비교되지 않을 권리.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도과정 가이드

- *피해자의 이름, 얼굴, 직업, 주거지역 등 피해자임을 짐작 가능하게 하는 내용과 영상 사용에 주의하기.
- *직접적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드러 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피해자가 드러날 요소들이 있는지 살피기.
- *성폭력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주변

- 인의 인격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영상을 보도하지 않기.
- *성폭력 범죄를 취재함에 있어 피해자의 경황없음을 이용하여 사전 동의없이 녹음 또는 촬영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기.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제3자로서의 객관적인 입장이란 남성중심적, 가해자 중심적일 수 있음을 인식하기.
- *성폭력 범죄를 피해자, 가해자간의 사적인 일이 아닌 사회구조적 맥락 안에서 해석하고 접근하여 취재하기.
- *가해행위에 대한 지나친 묘사로 피해자를 대상화시키지 않기.
- *인터뷰를 할 때에는 어떤 내용으로 취재할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 구하기.
- *방송 전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알리기.
- *사건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어려움이나 제도적 문제를 함께 다루기.
- *이미 취재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보도를 원치 않을 경우 기사화하지 않기.
- *인터뷰의 편집은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피해자의 답변을 왜곡 보도하지 않기.
- *방송 전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알리기.
- 둘째, 취재기자들의 전문화 교

육 강화이다. 취재기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함께 성폭력 관련 가해자들의 심리, 관련법규,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는 취재방식 등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남성중심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언론사내의 조직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즉 여성 인력들의 언론계 진출이 확대되어야 하고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의 제정이 요청된다.

넷째,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중재기구의 역할이 활성화되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언론보도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보도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범죄와 관련된 통신 기사에는 '요주의' 표시를 하도록 한다. 특히 몰래카메라에 의한 성관련 동영상이나 악성 댓글, 익명성에 의존한 각종 음해성 기사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를 줄이고 엄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강구될 필요

성이 있다.

어쩌면 성범죄를 다루는 언론의 수준이 그 사회 전반의 성의식 수준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언론보도의 역할은 중대하다고 하겠다. 언론은 보도태도에 따라 상수도 될 수 있고 하수도도 될 수 있는데 독자의 건강을 위해서 언론은 마실 수 있는 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상수도가 되어야 할 언론이 사회분위기에 휩쓸려 하수만 쏟아내서는 안 될 것이며, 성범죄 기사를 다루는 기자들도 인권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취재와 보도에 임해야 한다는 평범한 교훈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

〈참고문헌〉

김선남. 『사회문제 아닌 개인적 성윤리로 규정』. 「신문과 방송」. 1996. 9.
 권수현. 『시청률 경쟁에 가린 피해자 인권』. 「신문과 방송」. 2001. 1.
 박용진. 『성적 표현의 잠재적 유해성에 관한 최신연구』. 「방송영상진흥원」. 2005. 10.
 이원숙. 『성폭력과 사회복지』. 경인문화사. 1998.
 정하경주. 『불안감만 부추기는 성폭력 보도』. 「신문과 방송」. 2006. 4.
 지광준. 『성범죄』. 경인문화사. 1998.
 지광준. 『범죄와 청소년 비행』. 케이엔비. 2001.
 최진봉. 『미디어 성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프로그램텍스트」 6호. 2002.
 동아일보. 『성범죄 보도와 인권』. 독

자인권위원회 좌담. 2006. 2. 23.
 미디어 오늘. 『성범죄 보도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2006. 2. 23.
 미디어 오늘. 『기자들, 성폭력 보도 앞서 교육부터 받아야』. 2006. 3. 1.
 세계일보. 『청소년 성폭력 보도 신중해야』. 2006. 1. 25.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www.rape119.or.kr/>
 해바라기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한국언론재단
<http://www.kpf.or.kr/>
<http://www.kinds.or.kr/>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노컷뉴스, 쿠키 등
 지상파 방송사
 KBS, MBC, SBS, EBS.